

EUDR 가이드

목재



EUDR 가이드라인

목재







CONTENTS

www.forest.go.kr



7

1. EUDR 요약

8

2. EUDR 개요

- (1) 도입배경
- (2) 이행일정

10

3. 법안 주요내용

- (1) 규제 대상(법안 적용 대상)
- (2) 기업규모 구분(대·중·소·영세 구분 및 기준)
- (3) 기업규모에 따른 EUDR 적용일
- (4) 목재 규제 품목
- (5) 기업의무
- (6)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 (7) 제재&처벌
- (8) 역외공급자란?
- (9) 역외공급자의 의무

22

4. EUDR 관련 용어 정리 및 FAQ

- (1) EUDR 용어정리
- (2) FAQ : 역외기업의 EUDR 적용 여부
- (3) FAQ : CN 코드란?
- (4) FAQ : EUDR의 규제 품목 목록에서 “ex”가 붙은 CN 코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5) FAQ : EUDR 발효 이전에 생산된 상품이나, EUDR의 기업 적용일 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는 어떻게 규제가 적용되나요?
- (6) FAQ : 복합상품이란?
- (7) FAQ : 포장용지는 EUD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8) FAQ : 자연재해도 산림전용(deforestation)에 포함되는지?
- (9) FAQ : EUD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 (10) FAQ : EUDR 적용 면제 품목



1. EUDR 요약

구분	내용																				
법안명	EU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																				
주요 내용	규제 품목을 지정하고 기업이 관련 상품을 EU 시장으로 수입, 출시, 유통 및 수출 시, 상품이 ①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가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에서 ②생산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했음을 실사 선언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																				
규제 품목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개 원자재와 파생 상품																				
기업 구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기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분류에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 구분</th> <th>대차대조표 총액</th> <th>순 매출액</th> <th>평균 직원 수</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td> <td>2,500만 유로 초과</td> <td>5,000만 유로 초과</td> <td>250명 초과</td> </tr> <tr> <td>중기업</td> <td>2,500만 유로 이하</td> <td>5,000만 유로 이하</td> <td>250명 이하</td> </tr> <tr> <td>소기업</td> <td>500만 유로 이하</td> <td>1,000만 유로 이하</td> <td>50명 이하</td> </tr> <tr> <td>영세기업</td> <td>45만 유로 이하</td> <td>90만 유로 이하</td> <td>10명 이하</td> </tr> </tbody> </table>	기업 구분	대차대조표 총액	순 매출액	평균 직원 수	대기업	2,500만 유로 초과	5,000만 유로 초과	250명 초과	중기업	2,500만 유로 이하	5,000만 유로 이하	250명 이하	소기업	5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50명 이하	영세기업	45만 유로 이하	90만 유로 이하	10명 이하
기업 구분	대차대조표 총액	순 매출액	평균 직원 수																		
대기업	2,500만 유로 초과	5,000만 유로 초과	250명 초과																		
중기업	2,500만 유로 이하	5,000만 유로 이하	250명 이하																		
소기업	5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50명 이하																		
영세기업	45만 유로 이하	90만 유로 이하	10명 이하																		
기업 의무	실사(자료 수집, 위험 평가, 위험 완화조치), 실사 선언서 제출, 관련 자료 보관 및 공시																				
적용 시점	<p>대·중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 이하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p> <p>* 기존 EU 목재 규정(EU Timber Regulation, 이하 EUTR) 적용 상품에 전환 기간 부여, EUTR의 적용을 받던 품목 중 2023년 6월 29일 이전에 생산된 상품은 2028년 12월 31일부터 EUDR 적용</p>																				
산림전용 위험등급 평가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별 위험등급</th> <th>국가</th> </tr> </thead> <tbody> <tr> <td>저위험국</td> <td>한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방글라데시, 칠레,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140개국</td> </tr> <tr> <td>표준위험</td> <td>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공고민주공화국 등 저위험국이나 고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50개국</td> </tr> <tr> <td>고위험국</td> <td>북한,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4개국</td> </tr> </tbody> </table>	국가별 위험등급	국가	저위험국	한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방글라데시, 칠레,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140개국	표준위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공고민주공화국 등 저위험국이나 고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50개국	고위험국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4개국												
국가별 위험등급	국가																				
저위험국	한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방글라데시, 칠레,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140개국																				
표준위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공고민주공화국 등 저위험국이나 고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50개국																				
고위험국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4개국																				
제재	<p>위반 시 상품 관련 수익 몰수, 시장 접근성 제한, 수출 일시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최대 벌금액은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EU 총매출액의 최소 4% 이상</p> <p>* 법적 규제의 대상은 EU 역내 운영자 및 거래자이며, 역외 공급자들은 해당되지 않음. 다만 EU 역내 운영자들과 신뢰관계에 입각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목재 규제품목 CN코드 (HS코드)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7 및 48에 속하는 펄프 및 종이 상품, 49에 속하는 인쇄된 책, 신문, 그림 및 기타 인쇄된 상품, 9401,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91, 940610																				

2. EUDR 개요

(1) 도입배경

전 세계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조절, 물과 토양 정화 등 자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약 3분의 1의 인구가 산림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4억 2천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었고, 이는 꾸준히 매년 1천만 헥타르씩 소실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 파괴의 원인 중 90%가 농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산림전용과 관련된 농산물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소비하였으며 이중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와 관련된 상품이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규제인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을 마련했습니다.

EUDR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와 관련된 상품이 세계의 산림 전용(deforestation)과 산림 황폐화(degradation)를 가속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연합은 EU시장에서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은 EU 역내로의 수입, 출시, 유통,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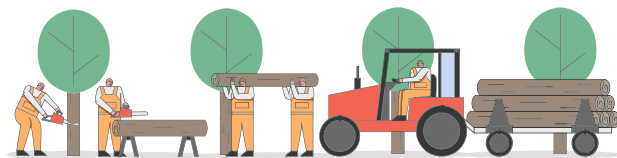
(2) 이행일정

EUDR은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2023년 6월 29일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EUDR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EU의 대·중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소·영세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 규제 품목과 내용 확대



3. 법안 주요내용

(1) 규제 대상(법안 적용 대상)

EUDR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총 7개 품목 및 관련 파생 상품을 EU 역내 시장에서 취급하는 역내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에게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상업적인 활동 과정에서 관련 규제 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상업적 활동'이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가공, 출시하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거래자는 앞서 언급한 운영자의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상품 출시 이후 관련 상품을 EU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규제대상	정의
운영자 (Op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시장에서 상업 활동으로 EUDR의 규제 품목을 수입, 출시 및 역외로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규제 품목을 또 다른 규제 상품으로 전환하는 회사 역시 운영자에 포함 • 역외에서 수입된 상품의 경우, 운영자는 수입된 규제 상품이 세관 절차상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에 따라 신고될 때, 세관 신고서 관련 데이터에 수입자 역할로 표시된 사람을 의미 (예) 규제 상품의 수입 및 가공 회사, 해당 상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 등
거래자 (Tra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출시 후, 관련 상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예) 규제 상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 대형 슈퍼마켓 체인, 온라인 쇼핑몰 등



(2) 기업규모 구분(대·중·소·영세 구분 및 기준)

EUDR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와 이행 의무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EUDR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연간 재무제표, 연속 재무제표 및 관련 보고서에 관한 EU 지침 (Directive 2013/34/EU)’ 제3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집행위원회 위임법 ‘Directive 2023/2775/EU’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UDR의 기업 구분

기업구분	대차대조표 총액	순 매출액	평균 직원 수
대기업	>2,500만 유로	>5,000만 유로	> 250명
중기업	≤2,500만 유로	≤5,000만 유로	≤250명
소기업	≤500만 유로	≤1,000만 유로	≤50명
영세기업	≤45만 유로	≤90만 유로	≤10명

참고 : 기업 구분의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범주 기업으로 분류

(3) 기업규모에 따른 EUDR 적용일

- ▣ 대·중 기업 : 2025년 12월 30일
- ▣ 소기업 이하 : 2026년 6월 30일

(4) 목재 규제 품목

- ▣ 목재 상품에 대한 전환 기간

EUTR은 2025년 12월 30일 EUDR의 적용과 함께 폐지되며 이후로는 EUDR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EUDR 적용 이전에 이미 EUTR이 적용되던 상품에 한해 별도의 규칙과 3년의 전환기간이 부여됩니다.

EU 목재 규정(EUTR)의 적용 품목



떨나무(4401), 원목(4403), 철도용·궤도용 받침목(4406), 제재목(4407), 베니어용 단판(4408), 성형목재(4409), 파티클보드(4410), 섬유판(4411), 합판이나 베니어 패널(4412), 고밀도 목재(4413), 그림, 사진 등의 프레임(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4415), 나무로 만든 통(4416), 목재 가구(4418), 펄프(47), 종이와 판지(48), 목재가구(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9030), 조립식 목재 건물(94060020)

기존 EUTR이 적용되던 상품 중, EUDR이 발효된 2023년 6월 29일 전에 생산된 상품은 전환 기간인 2028년 12월 30일까지 EUDR이 아닌 EUTR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3년 6월 29일 이후 생산된 목재상품은 별도의 전환 기간 없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EUDR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년의 전환 기간 이후에는 모든 상품에 EUDR이 적용됩니다.

목재 상품에 대한 전환 기간 적용 예시

기존 EUTR 적용 품목의 생산시점	EU 시장 출시 시점	적용 규제
2023년 6월 29일 전	2028년 12월 30일 이전 (2025년 12월 30일~2028년 12월 30일까지 전환 기간 3년 적용)	EUTR
	2028년 12월 31일부터	EUDR
2023년 6월 29일 이후	2025년 12월 30일부터(별도의 전환 기간 없음)	EUDR

2023년 6월 29일 전 생산된 EUTR 적용 상품은 전환 기간(2025.12.30.~ 2028.12.30.)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환 기간 동안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실사나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을 사용해 전환 기간 이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기업 또한 공급망 조사 등 실사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사 및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기업은 사용한 상품의 EU 시장 출시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문서로는 EU 수입 시 관세 신고서, EU 생산 상품의 경우 생산일 관련 문서(벌채 허가증, 송장 등), 판매 문서(계약서, 주문서, 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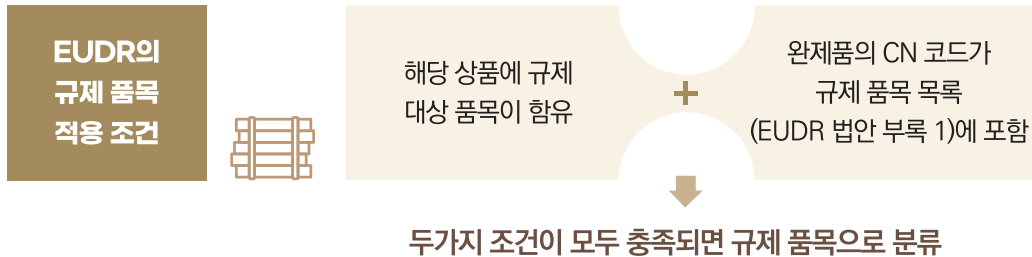
EUDR 목재 규제품목

규제품목	파생상품	CN코드*
목재	연료용 나무, 칩, 톱밥, 통나무, 펠릿 등 응집 여부는 관계없음 (2008/98/EC 제3조에 명시된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음)	ex 4401
	숯	ex 4402
	원목	ex 4403
	후프우드	ex 4404
	목모와 목분	ex 4405
	철도용, 궤도용 받침목	ex 4406
	제재목	ex 4407
	베니어용 단판	ex 4408
	목재	ex 4409
	파티클보드	ex 4410
	섬유판	ex 4411
	합판, 베니어 패널	ex 4412
	고밀도 목재	ex 4413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ex 4414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 (중고 상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음)	ex 4415
	나무로 만든 통 (중고 상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음)	ex 4416
	목재로 만든 공구(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417
	목재 가구(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418
	목재 식기구, 주방용품(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419
	마르케트리 목제품, 상감세공 목제품(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420
	그 밖의 목제품(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421
	펄프(중고 상품, 대나무 및 재활용 기반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7
	종이와 판지(2008/98/EC 제3조에 명시된 폐기물, 중고 상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 상품에 동봉되는 부속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8
인쇄된 책, 신문 등의 인쇄 상품 (중고 상품, 상품에 동봉되는 부속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49	
의자(제 9402호 및 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9401	
목재가구(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91	
조립식 목재 건물(중고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ex 940610	

*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는 EU에서 상품 분류에 사용하는 8자리 코드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Harmonized System Code)의 앞 6자리와 동일하며, EU가 독자적인 하위 구분을 위해 2자리를 추가해 구성한 코드입니다. EUDR 법안 부록 I은 CN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현재 (2025년 9월 기준)까지 해당 목록의 CN 코드는 모두 4~6자리로 기재되어 있어, HS 코드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코드 앞의 'ex'는 extracted로 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이 아닌 일부 상품에만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당 CN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상위 범주의 규제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에만 EUDR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품목은 해당 상품에 규제 대상 품목이 함유되어 있고, 완제품의 CN 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해당될 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규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수입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EU 역내 세관을 통과할 때 부여되는 CN 코드에 따라 EUDR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완제품의 CN 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해당하더라도, 규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 품목을 사용하여 제작했다라도 완제품의 CN 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상품이 EUDR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상품에 부여된 CN 코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품목의 EUDR 적용 예시

- 예시 1.** EUDR의 규제 품목인 팜유(HS 코드 1511)를 사용하여 비누(HS 코드 340111)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팜유는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만, 최종 상품인 비누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2.** EUDR의 규제 품목인 고무 타이어(HS 코드 4011)를 사용하여 완제품 자동차(HS 코드 8703)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최종 상품인 자동차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단, 역내에서 완제품 조립을 위해 고무 타이어를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타이어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함.
- 예시 3.** EUDR의 규제 품목인 코코아 가루(HS코드 1805)를 사용하여 초콜릿 쿠키(HS 코드 19059010)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초콜릿 쿠키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코코아 가루를 사용하여 초콜릿 가공품(HS 코드 1806)을 만들어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함.
- 예시 4.** 금속이나 고무를 가공해 의자(HS 코드 9401)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인 의자는 EUDR 규제 품목 목록에 포함되지만, 규제 품목 범주에 해당하는 원자재인 목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EUDR이 적용되지 않음.
- 예시 5.** 규제 품목에 해당되지만 폐기물이나 상품의 수명주기가 끝난 상품으로 만든 상품의 경우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면, 주택 철거 시 회수된 목재로 만든 가구, 재활용지로 만든 종이 상품, 재활용 소가죽으로 만든 상품 등이 해당됨. 다만, 상품 가공 단계에서 새로운 EUDR 규제 품목의 원자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에 대한 실사와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함.

(5) 기업의무

EUDR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총 7개 품목 및 관련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역내 기업에 실사, 실사 선언서 제출, 관련 자료 보관 및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의무는 ①기업 유형(운영자와 거래자), ②규모(대·중·소·영세 기업), ③해당 기업이 관련 규제 상품을 EU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실사

EU 시장에 규제 상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실사를 통해 ①해당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후 발생한 산림전용이나 황폐화된 토지와 관련이 없으며, ②생산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이 실사를 진행할 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자료수집

기업은 통관 절차를 거쳐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역외로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공급업체, 생산 국가, 원자재 수확의 합법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적으로 해당 상품 및 원자재가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좌표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업은 실사를 거쳐 해당 상품의 CN 코드, 수량, 생산 국가, 지리적 위치, 좌표 등 수집한 정보를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에 실사선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EU 시장에 해당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위험 평가

다음으로는 1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EUDR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이나 원자재가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 국가의 위험도, 공급망의 복잡성, 화학적·물리적 처리 과정 등 상품별 생산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3단계 : 위험 완화 조치

만약 위험 평가에서 EUDR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시, EUDR 제11조에 따라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기업이 취한 완화 조치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당국의 요청 시 보관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를 수행하는 모든 운영자와 대기업 거래자는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연 1회 관련 체계를 검토하여 공급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사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저위험으로 평가된 지역에서 관련 원자재 및 상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간소화된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위험 국가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1단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한 뒤, 해당 공급망에 표준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상품이나 원자재가 유입되거나 우회될 가능성만을 평가하면 됩니다. 관련 위험이 없는 경우,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하는 공급망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 의무는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은 Part 3-(6)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참고)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각 회원국의 통관절차 이전까지 **실사선언서**로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EU 시장에 최초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각 회원국의 통관절차 이전까지 **실사선언서**로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EU에 최초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기업 의무(상위 공급망)

기업 구분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 시행 및 실사 시스템 구축	정보 보관 의무	연례보고서 공시
운영자 (Operator)	대기업 (Non-SME)	○	○	○	○
	중소기업 (SME)	○	○	○	×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하위 공급망인 경우)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이나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규제 상품을 시장에 출시, 유통 및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용한 상품의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여 새로운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 운영자와 거래자는 기존 실사 선언서를 참조해 실사가 EUDR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위 공급망에서 규제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하위 공급망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지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실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출된 실사 선언서의 확인 가능한 정보(생산 국가, 상품 수량 및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 등)를 근거로 실사 적절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운영자 및 거래자의 경우 상품과 관련된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를 확인하는 의무만 있으며, 실사 선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운영자의 경우 규정 위반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관할 실사 당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거래자는 취급하는 상품의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를 확보 및 보관하고, 관할 당국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 만약 운영자가 이미 EU에 출시된 규제 품목을 사용해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 품목이나 원자재를 추가 사용할 시, 이는 해당 원자재를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사 및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EU에 이미 출시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기업 의무(하위 공급망)

기업 구분		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 시스템 구축	상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기업 의무	정보 보관 의무	연례 보고서 공시
운영자 (Operator)	대기업 (Non-SME)	○ (상위 공급망 실사 선언서 참조)	○	○ (실사 적절성 검토)	○	○
	중소기업 (SME)	× (상위 공급망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 확보)	×	○ (위반 위험 확인 시 보고)	○ (간소화*)	×
거래자 (Trader)	대기업 (Non-SME)	○ (상위 공급망 실사 선언서 참조)	○	○ (실사 적절성 검토)	○	○
	중소기업 (SME)	×	×	×	○ (간소화*)	×

* 간소화된 정보 : 해당 거래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공급업체와, 거래자가 상품을 공급한 거래처의 이름, 등록된 상호, 상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웹주소, 해당 상품의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 등

▣ 정보보관 및 공시

운영자 및 거래자는 실사 수행에 관련된 자료 및 관련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당국에서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료 보관 기간은 실사 선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5년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실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매년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시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6)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 결과

2025년 5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기업 적용에 앞서 각 국가의 산림전용 위험등급을 평가하여, 모든 국가의 위험등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등급은 저위험(Low risk), 표준위험(Standard risk), 고위험(High risk)의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등급에 따라 기업의 실사 의무와 관할 당국의 최소 검사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산림전용 위험등급 평가 결과

국가별 위험등급	국가
저위험국	한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방글라데시, 칠레,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140개국
표준위험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저위험국이나 고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50개국
고위험국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4개국



평가 기준

정량적 기준

▲ 연간 산림전용 비율 및 면적, ▲ 규제품목 생산 농지 확장 정도, ▲ 규제품목 생산 추이
* '2020년 세계산림자원평가' 등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식 자료 활용

정성적 기준

산림전용과 관련하여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의 농업·임업·토지 이용 부문 내용,
▲ EU 및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 유무, ▲ 정부 차원의 법령 유무 및 집행체계 등



평가 영향

- ✓ EUDR 적용 상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당국의 연간 점검 비율 차등
 - 저위험국은 전체물량의 1%, 표준위험국 3%, 고위험국 9%
- ✓ EU 역내 운영자가 저위험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의무 면제 등 실사 의무 간소화

▣ 위험등급별 최소 점검 비율

EUDR은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라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의 최소 점검 비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서 상품이나 원자재가 생산된 경우, 관할 당국은 해당 운영자 및 상품 수량의 최소 9%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표준위험 국가의 경우 3%, 저위험 국가의 경우 1%로 최소 점검 비율이 낮아집니다.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른 EUDR 적용 차이

국가별 위험등급	관할 당국 점검 비중	실사 의무
저위험	1%	완화된 실사 의무 적용 (정보수집, 우회 위험 평가)
표준위험	3%	일반 실사 의무 적용 (정보수집, 위험 평가, 위험 완화 조치 등)
고위험	9%	

▣ 저위험국 실사 의무 완화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및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상품의 경우, 기업은 실사를 통해 관련 공급망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공급망의 복잡성 및 규제 우회 위험(고위험 및 표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경유되거나 우회 수입될 가능성)만 평가하면 됩니다. 즉,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는 면제되어 보다 완화된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위험 국가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관련 공급망의 산림전용 또는 불법성과 관련된 정보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할 당국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후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7) 제재&처벌

EUDR을 위반하여 산림전용 관련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 대한 벌금과 벌칙 수준은 각 EU 회원국이 제정합니다. EUDR은 관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해당 상품의 가치와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증가합니다. 최대 벌금액은 해당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EU 전체 매출액의 최소 4% 이상입니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수익 몰수, 최대 12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관련 상품의 EU 시장 출시, 유통, 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또는 표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및 원자재가 저위험 국가를 경유해 저위험 국가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규정 회피로 식별 시 제재가 적용됩니다. 관할 당국은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품의 유통, 수출, 반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 최대 72시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관할 당국의 평가 후 임시 조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8) 역외공급자란?

EU 역외에서 EU 시장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개인

(9) 역외공급자의 의무

직접적인 법적의무는 EU 역내 운영자 또는 거래자에게 부과되지만, 역외공급자는 EUDR 관련 정보 제공과 협조를 통해 거래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4. EUDR 관련 용어 정리 및 FAQ

(1) EUDR 용어정리

▣ 산림전용(deforestation)

인위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림을 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산림전용과 무관(deforestation free)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대상 관련 상품을 의미

* 즉, 규정 시행 이후(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에서 농업용으로 전환된 농지에서 재배된 대상 관련 상품은 EU로의 수출이 불가

▣ 산림 황폐화(degradation)

원시림(primary forest) 또는 천연 갱신림(naturally regenerated forest)에서 산업조림지(plantation forest) 또는 기타 임야(other wooded land)로 변경된 경우, 원시림(primary forest)에서 인공림(planted forest)로 변경된 경우

(2) FAQ : 역외기업의 EUDR 적용 여부

EUDR은 EU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역외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EUDR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내 바이어 기업에는 실사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들은 역외 공급업체에게 EUDR 준수를 요구하거나 공급망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품목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거래처의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 상품 및 원자재 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역외 기업이라도 직접 EU로 수입하거나, EU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역내 운영자로 간주되어 EUDR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3) FAQ : CN 코드란?

EU 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역내 통관 절차에서 부여되는 CN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는 EU에서 상품 분류에 사용하는 8자리 코드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Harmonized System Code)의 앞 6자리와 동일하며, EU가 독자적인 하위 구분을 위해 2자리를 추가해 구성한 코드입니다. EUDR 법안 부록 I은 CN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현재(2025년 3월 기준)까지 해당 목록의 CN 코드는 모두 4~6자리로 기재되어 있어, HS 코드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할 때 사용하는 6자리 HS 코드가 EUDR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FAQ : EUDR의 규제 품목 목록에서 “ex”가 붙은 CN 코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품 코드 앞의 “ex”는 해당 CN 코드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이 아니라, 상위 범주의 규제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에만 EUDR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CN 코드 9401)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도, 상위 범주 원자재인 목재로 만든 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EUDR은 ①해당 상품이 규제 품목 목록의 CN 코드에 해당하고, ②목록에서 규정하는 관련 원자재로 만들어졌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규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5) FAQ : EUDR 발효 이전에 생산된 상품이나, EUDR의 기업 적용일 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는 어떻게 규제가 적용되나요?

EUDR의 제1조 2항에 따르면, EUDR 발효일 2023년 6월 29일 전에 생산된 상품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UDR 발효일과 기업 적용일(대·중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소기업 이하는 2026년 6월 30일) 전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EU 시장에 출시되는 상품 역시 EUD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환 기간 동안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만드는 경우, 제출된 실사 선언서가 없어 공급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EUDR 적용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전환 기간 동안 출시된 상품을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세 신고서, 벌채 허가증·소 출생증명서·송장 등 생산일 증명 서류, 계약서, 주문서, 송장, 운송서류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6) FAQ : 복합상품이란?

복합 상품은 코코아 가루, 코코아 버터, 팜유 등이 포함된 초콜릿 바처럼 여러 가지 규제 품목이 혼합되어 사용된 상품을 말합니다. 초콜릿 바 외에도, 가구나 타이어와 같은 상품은 다양한 규제 품목이 혼합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 상품의 경우, 해당 원자재와 관련된 규제 품목에만 실사 의무 및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규제 품목 목록에서 어떠한 원자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코아 가루, 코코아 버터, 팜유가 포함된 초콜릿 바(CN 코드 1806)의 경우 초콜릿 바는 코코아 원자재의 하위 품목으로 분류되며 코코아 가루와 코코아 버터에 대해서만 실사 및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초콜릿 바에 포함된 팜유의 경우, 전체 규제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코코아 원자재의 하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콜릿 바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팜유에 대한 실사나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FAQ : 포장용지는 EUD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용지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UDR Annex I 에 따라 목재 HS코드 4415로 분류된 품목의 포장재가 다른 상품의 포장인 아닌 독립적인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된다면 이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실사가 요구되지만, 포장재가 다른 상품을 ‘지원, 보호 또는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상품 등에 포함된 사용자 매뉴얼도 독립적으로 구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대상입니다.

(8) FAQ : 자연재해도 산림전용(deforestation)에 포함되는지?

EUDR에서 ‘산림전용(deforestation)’의 정의는 인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산림을 농업 용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한 이후 해당 지역이 농업용지 등으로 전환될 경우, 이는 EUDR에 따라 산림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규제대상 상품을 EU에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며, 운영자는 해당 산림이 재생된 후 목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9) FAQ : EUD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EU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EU 역내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UDR의 법적의무는 역외공급자들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우리 업체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업체가 받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EU 운영자와 신뢰성 있는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EU 운영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 FAQ : EUDR 적용 면제 품목

EUDR은 상업적인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규제 품목을 EU 시장에 출시, 배치, 유통,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샘플 및 테스트용 상품 : 경제적 가치와 수량이 미미하고, 상품의 구매 권유 및 이를 위한 상품 테스트, 분석,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모되는 상품은 EUDR 적용이 면제됩니다.
- 2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규제 품목을 역내로 반입, 생산, 소비하는 경우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100% 재활용 또는 폐기물을 사용한 상품, 또는 중고 상품 : 상품 생산 시 재활용 재료나 폐기물만을 이용한 경우,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자재가 일부 포함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해서는 EUDR이 적용되므로 실사를 거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타이어로 만든 케이싱(Casing), 카커스(Carcass)에도 EUDR이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천연고무 부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품에는 EUDR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고 상품 전반에도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또는 폐기물로 만든 상품이 EUDR 적용 면제를 받으려면 성분 분석서, 원자재 공급업체 송장, 생산된 국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활용 원자재 또는 폐기물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4 상품 운송 포장재 및 부속품 : 상품 보호, 운송 목적의 포장지나 목재 팔레트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품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카탈로그 역시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EUDR 적용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장재, 팔레트, 관련 설명서, 카탈로그 등이 별도의 상품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EUDR이 적용됩니다.
- 5 전환 기간에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 EUDR이 발효된 2023년 6월 30일부터 기업 적용일(대·중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소기업 이하는 2026년 6월 30일) 전까지의 전환 기간에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들은 EUDR 적용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환 기간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면제를 위해 사용한 상품의 EU 출시 시점을 입증하는 관세 신고서, 벌채 허가증·소 출생증명서·송장 등 생산일 증명 문서, 계약서, 주문서, 송장, 운송서류 등의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6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원자재를 사용한 상품 : EUDR 법안 부록에 기재된 규제 품목 CN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EUDR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EUDR은 팜 오일, 천연고무, 목재 등의 원자재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UDR 지침문서에 따르면 팜 오일은 기름야자 종(*Elaeis guineensis* 포함)에서 추출한 팜유로 규제 품목을 한정하고 있어, 아탈레아 종(*Attalea speciosa*)의 바바수(Babassu)유 및 기타 야자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은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천연고무의 경우 EUDR이 적용되는 범위는 ‘헤베아 브라질리엔시스(*Hevea brasiliensis*)’로 한정되며,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울, 치클 등의 유사 종 및 합성 고무(Synthetic rubber)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재의 경우 대나무(Bamboo)와 등나무(Rattan)로 만든 상품은 EUD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